

2025년
**산림소득분야
사업시행지침**

2025. 3.

Ⅲ 임산물생산기반조성

담당 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산림청	사유림경영소득과	사무관 양유진 주무관 김승엽	042-481-4194 042-481-4209

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

*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·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'25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'26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.

가 토양개량제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 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고	지방비	용자	자부담	
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70	30	-	-	전년도 6~7월

- **사업목적** :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,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- **지원내용** : 석회질비료, 규산질비료, 목재제품
 - (석회질비료) 소석회, 석회고도, 부산석회/ (규산질비료) 규산질/ (목재제품) 목탄, 목초역
 - * 비료종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(농진청고시 제2024-28호) 별표1, 2에 따름
 - * 목탄은 목재제품 규격·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에 한하여 지원
- **지원조건** :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
 - *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
 - *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
- **지원제외** :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,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 (예)부산석고),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
- **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**

구분	지원 한도		지원 단가
수실류	(밤) 총사업비 504천원/ha	(밤 외) 총사업비 756천원/ha	*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(조달단가 우선 적용)
관상산림 식물류	(잔디) 총사업비 1,150천원/ha * 잔재비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	(잔디 외)총사업비 4,750천원/ha * 관상식물·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	
기타 임산물	(수실류,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임산물 품목) 총사업비 450천원/ha		

* (예) 밤나무(사양토pH4.7→pH5.5)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: 5,600원/20kg, 90포/ha

나 **유기질비료**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 방식	보조금액				신청기간
			국고	지방비	용자	자부담	
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1,000~1,400원	600원 이상	-	초과 금액	전년도 6~7월

○ **사업목적** : 제조제,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
○ **지원내용** : 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

- (유기질비료)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, (산양삼에 한하여)어박, 골분, 대두박
- (부숙유기질비료) 가축분퇴비, 퇴비

* 녹색제품(환경표시 인증제품, GR마크 인증제품) 우선 구매 유도
 *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

○ **지원조건** :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

* **지자체 공무원** 또는 **이장**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

○ **지원단가 및 한도**

- 지원단가 :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

(단위: 원/20kg)

구분	국고			지방비
	특등급	1등급	2등급	
유기질비료	1,400			600이상
부숙유기질비료	1,400	1,200	1,000	

- 지원한도 : ‘임산물 표준재배 지침’ 등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

○ **지원제외** :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

* 농식품부의 ‘유기질비료 지원사업’ 등

2

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

구분	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	
	공모사업	소액사업
사업대상자	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, 생산자단체	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
대상자 선정	지방자치단체	지방자치단체
보조비율	국고 40%, 지방비 20%, 용자 -, 자부담 40%	국고 20%, 지방비 30%, 용자 30, 자부담 20%
신청기간	전년도 4~6월	전년도 6~7월 중
사업 목적	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산화·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	작업로,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
지원 내용	<p>종자·종근 구입, 임내정리 및 식재, 관정·관수 시설, 보호울타리, 감시 시설, 작업로, 모노레일,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, 비닐하우스, 온실, 자동화 시설, 기계장비, 산림경영관리사, 숲가꾸기(숙아베기, 천연림보육, 풀베기, 덩굴제거, 가지치기, 어린나무가꾸기, 산물수집 등)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, 가지치기 등 관리 비용은 지원 불가 *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(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)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*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‘산림자원육성·관리(농특)’ 단위사업 예산의 ‘숲가꾸기’과 연계하여 선행하고,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,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	

구분	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									
	공모사업	소액사업								
지원 한도 (총사업비 기준)	(노지재배) 1억원 ~ 5억원 이하 (시설재배) 1억원 ~ 7억원 이하 * 2년간 분할지원 가능 * 설계·감리비(8% 이하), 기반 조성비(65% 이상), 숲가꾸기(20% 이하) 기타 부대비(7% 이하) 등으로 구성 * 종자·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기반조성비에 포함	1억원 미만 *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(종자·종묘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) * 종자·종묘,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 가능 *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
기타	- 공모사업 지원조건(품목별 면적기준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품목의 종류</th> <th>세 부 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</td> <td>(노지) : 25,000㎡/개소 이상 (시설) : 1,000㎡/개소 이상</td> </tr> <tr> <td>산림버섯류</td> <td>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</td> </tr> <tr> <td>관상산림식물류</td> <td>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(내부결재 필요)하여 사업 지원 가능 *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(예시) 약용류·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,000㎡/개소 이상, 버섯류 3,300㎡/개소 이상이어야 함 -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,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* 파쇄, 훈증,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%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		품목의 종류	세 부 내 용	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	(노지) : 25,000㎡/개소 이상 (시설) : 1,000㎡/개소 이상	산림버섯류	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	관상산림식물류	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
품목의 종류	세 부 내 용									
약용류·약초류·산나물류·수실류·수목부산물류	(노지) : 25,000㎡/개소 이상 (시설) : 1,000㎡/개소 이상									
산림버섯류	(노지 : 송이산가꾸기 포함) 3,300㎡/개소 이상 (시설 : 재배시설, 톱밥배지 생산시설) 1,650㎡/개소 이상									
관상산림식물류	(노지) 10,000㎡/개소 이상, (시설) 1,000㎡/개소 이상									

【 공모사업 유의사항 】

- (사업대상) '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
 - * '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, '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,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
- (사업비율)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(객관적 자료 제시)
 - * 단,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
 - *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(2021.12.23.)에 따라 처리(309p 참고)
 - * 토목 공사비 : 기반 조성비의 10% 이하로 가능하며,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(절토, 성토 등)은 지원 제외(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)
 - * 기타 부대비 : 사업 타당성 평가, 컨설팅, 정산보고서 검증 등 행정비용은 집행이 가능. 다만, 인·허가, 측량 비용 및 소모성 비용* 등은 지원 불가
 - 소모성 비용 : 안전화, 장갑, 토양개량제, 비료, 세금(공과금 등) 납부 등
- (기타 유의사항)
 - *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
 - *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교육 참석 의무(세부일정 별도 안내)
 - *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
 - *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, 총 사업비에서 제외

○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(공모·소액)

① 인건비

- (기준단가) 2025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(대한건설협회)
 - * 작업여건에 따라 별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
 - *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
 - *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5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, 산지정리, 제초작업, 묘목식재, 작업로시설, 활엽관목 제거, 숙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.
- (지원한도)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
 - *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·비속 중 1인에 한함

○ 제58조제1항제6호 :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(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·비속 중 1인에 한함)을 지출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

나.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

② 종자·묘목대

- (기준단가) 실단비를 적용하되, 2개 이상 견적서 기준

- * 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‘종자업’을 등록한 자이거나,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‘생산·수입판매 신고’를 한 자에게서 구입
- * ‘그 밖의 임산물’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
- * 산양삼 종자·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·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·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, 20만원/kg 이하로 지원
- *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,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(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.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)
- *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(조경수관측월보)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,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·지원
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20% 이하

- *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·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
(예)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

③ 표고버섯 자목 구입

- (지원요건)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,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, 노지에서 1,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

- 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

- 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에 사업 신청)
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
- (지원단가) 본당 금액 5,000원(W 12cm × L 120cm)

- 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
- (지원수량) 330㎡당 1,000본

- 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
- 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④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

- (지원요건)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㎡(60평)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,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
- 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 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 신청)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- (지원단가) 본당 금액 1,000원(W 15cm 이상 × L 15cm 이상)
- 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- (지원수량) ㎡당 본수 36본(총적 또는 재배상 기준)
- 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- 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⑤ 복령버섯 자목 구입

- (지원요건)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
- 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 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 신청)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- (지원단가) 본당 금액 2,000원(W 15~20cm × L 30cm)
- 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
- (지원수량) 330㎡당 577본
- 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- 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

- (지원요건)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,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(품종보호출원 완료)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(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
㉠ 바닥면적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

㉡ 6,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

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
* 종자업 등록하거나, 생산·판매신고로 배지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

- (지원주기) 2년 1회 지원가능

* (예) '24년 지원받았다면, '26년 지원 가능('25년에 사업 신청)

- (지원한도)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% 이하,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

- (지원단가) 봉당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, 갈변(접종·배양)배지 900원/kg

* 현장여건에 따라 지원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봉당 지원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(전자세금계산서 등)(배지 무게, 형태 차이를 반영)

- (지원수량) 바닥면적 330㎡당 ·(원통형) 10,000봉, (봉형) 6,000봉, (사각) 8,000봉

* 단,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

- (교부결정 전 구입)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(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, 증빙서류 등)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, 교부결정 이후,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·정산가능

*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

- (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) VI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참고 2,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(86쪽, 91쪽)

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
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⑦ 송이산 가꾸기

- (지원단가) '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'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

* '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' 지침참조 (324쪽)

⑧ 산림버섯 재배시설(비닐하우스, 냉·난방시설 등)

- (지원요건)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
- * 산림버섯 재배·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(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, 임업인종합연수원, 관련대학 등)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(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)
- *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*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
- (지원내용) 비닐 재배사, 냉난방기,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·보수 및 증·개축
- *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% 범위 내 가능/ *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/건 이하
- (표준모델) ‘표고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지침’ 활용
- * 산림청 누리집>정보공개>통합자료실>“표준모델”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
- (국산품종 확인) VI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(91쪽)
- 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
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⑨ 톱밥배지 생산시설(혼합기, 입봉기, 살균기, 냉각기 등)

- *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 위한 시설
- (지원요건)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‘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’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(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, 임업인종합연수원, 관련 대학 등)을 받은 자
- *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
- *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‘종자업’ 등록하고, ‘생산·수입판매 신고’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(자가소비는 제외)
- *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*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(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% 범위 내 지원), 자동화 기기·시설 지원 가능
- (지원내용) 배지혼합기, 배지처리기(건조장치 포함), 탈병기, 입봉기, 살(멸)균기, 살균대차, 종균기, 위생과 관련된 기기, 배양시설 등
- *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
- (국산품종 확인) VI.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(91쪽)
- * 국내개발 종균(표고) 산조701, 산조705, 참아람, 산마루1호, 산백향, 설백향 등
국외개발 종균(표고) : 엘808, 추재2호 등

⑩ 관수·관정시설(관상산림식물류)

- (지원요건)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(1일 양수량 30톤 이상, 수중모터 2HP 이상)
- * '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' 지침 참조
- *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,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/개소
- * 관수·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

⑪ 관수·관정시설(기타 품목)

- (지원한도) 스프링클러 6,000천원/0.5ha, 점적 4,500천원/0.5ha, 관정(6인치, 일반형) 9,500천원/공
- *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
- *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

⑫ 대추 등 비가림시설

- (지원요건) 최소 330㎡(100평) 이상의 작물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
- (지원내용) 대추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
- *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

⑬ 덩굴류 유인시설

- (지원한도) ㎡당 10천원 이내

⑭ 재해예방시설

- (지원내용) 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

⑮ 감시시설(보호울타리, 감시카메라 등)

- (지원한도) 보호울타리 40천원/m
- *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 지원 가능

⑯ 모노레일

- (지원요건)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인 자
- * 관광·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(견인차, 대차, 주행레일 포함)

⑰ 하우스 시설(관상산림식물)

- (지원한도) 하우스 시설 250천원/3.3㎡, 유리온실 800천원/3.3㎡, 아크릴 시설 1,000천원/3.3㎡
- *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
- *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(사무공간, 카페, 휴식공간 등)
- * 하우스 시설비이며,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

⑱ 하우스 시설(산림버섯, 관상산림식물류 이외)

- (지원한도) 하우스 시설 250천원/3.3㎡
- *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
- * 임산물 재배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(사무공간, 카페, 휴식공간 등)
- * 하우스 시설비이며, 재해예방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

⑲ 임산물 저장·건조시설

- (지원요건)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(연면적) 총합이 100㎡ 이하로,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*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(사무실, 화장실 등)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

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

- (지원한도)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, 총사업비의 7% 이내 지원
- * ‘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’ 지침 참조(318쪽)

㉑ 작업로 시설(신규)

- (지원요건) 노폭은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‘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’을 따르되,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
- * 위험구간 콘크리트 포장지원 가능(종단기울기 15%를 초과하는 경우, 구간거리 40m 이내)
- * ‘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’ 참조(331쪽)
- * 작업로(포장)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·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
- (지원한도)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, 포장지원은 1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이내
- * 단,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

㉔ 산림경영관리사

- (지원요건) 시설규모(연면적)는 33m²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(복층 불가)
- *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(작업대기·휴식 공간 면적은 25% 이하) 또는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관리사(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)에 한하여 설치
- *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「산지관리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
- * 동일필지(연접포함 15ha)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
- *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(6년) 철저
- (지원한도)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
- * 단, 포장은 1km 내에서 40m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
- (지원내용) ‘산림경영관리사표준모델 지침’ 활용(353쪽)
- * 2개 유형(컨테이너형, 판넬형), 면적 기준 고려한 6종

【 유의사항 】

-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·확인을 통해 실단가 적용 가능
 - *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(농협 등 구매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) 제시 시 조정 가능
- 지원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(조달 단가 우선 적용)
- 구조물 등 시설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,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
 - * 예) 버섯재배시설, 톱밥배지생산시설, 관정·관수시설, 헨스 및 CCTV, 모노레일, 저장·건조시설 등
- 종자·종묘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

3

임산물 생산기반조성

사업대상자	대상자 선정	선정방식	보조비율(%)				신청기간
			국	지	융	자	
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	지방자치단체	자체	20	30	30	20	전년도 6~7월중

- * 용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
- *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○ 사업 목적 :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(보완)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증대 도모

○ 지원한도 및 단가

- 지원한도 : 총사업비 1억원 미만(생산장비+재해예방시설+작업로시설+밤나무노령목관리)
- 지원단가 :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,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적용(조달 단가 우선 적용)

○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

① 생산장비 *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

- (지원내용) 임산물 재배·생산 기계·장비, 지상방제장비, 친환경방제장비

· 기계·장비 : 임산물 재배·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·장비

* (기계·장비 예) 굴착기, 4륜구동 오토바이, 동력운반차, 퇴비발효기, 선별기, 예취기, 기계화 전지기, 수집기, 잔디깎기, 동력수확기, 파쇄기* 수액살균기, 레일형 운반기, 고소작업대, 동력분무기, 이식기, 파종기, 자동전지가위, 비료살포기, ICT 등 원격·자동시설을 노지,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

· 지상방제장비 : 병해충 방제용 장비 * 차량제외

· 친환경 방제장비 : 포충등,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

* (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주의사항)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(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)/ * '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' 참고

- (지원요건)

- 굴착기는 아래 작물별 기준면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,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*에 한하고,
-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이상이어야 하며
- 파쇄기는 가치지기 등 잔여산물을 파쇄하여 재배지에 재투입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
- 선별기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(선별 직경 등)에 부합되는 기종에 한함

* 면허 구비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가 해당조건을 구비하고 현재
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

*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

< 굴착기 작물별 기준면적 > 수실류 15ha, 약용·약초·산나물류 10ha,
관상산림식물류(조경수) 5ha, 육림업 30ha 이상

- ▶ 동일·연접 시·군·구 내 임산물 재배면적 합산 가능
- ▶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, 동일 사업1)으로 이미
지원받거나, 타사업2)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)

1)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/2)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및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

- (지원제한)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기계·장비를 지원받은
임업인 등,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·장비 지원 불가

- (지원한도)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가능하나 지원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
(추가비용 자부담),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한도는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

< 굴착기 차등지원 한도 >

▶ 장비중량 3.5톤 미만 : 총사업비 40백만원/대, 장비중량 3.5톤 이상 : 총사업비 60백만원/대

* 예 3.5톤 이상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12백만원, 지방비 18백만원, 융자 18백만원, 자부담 19백만원

- (중요재산 부기등기)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(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
장치를 통한 기록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사후관리기간(구매일로부터 7년간) 동안
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 금지 설정(부기)

< 부기 등록 내용 >

▶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

▶ 해당 기계장비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상 ‘건설기계대여업’에 활용 불가

- (중요재산 스티커) 굴착기 등 3천만원 이상 기계장비는 중요재산 스티커 부
착 현장 확인 후 정산 의무(96쪽, 중요재산 스티커 참조)

②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 (보완)

- (지원내용) 냉·난방시설, 관정·관수시설, 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
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

*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 교체는 불가하며, 장기성 필름으로의 교체는 지원 가능

③ 작업로 시설(보수)

- (지원내용)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, 시비,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
 - * 노폭은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'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'을 따르되,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
 - *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(중단기울기 15%를 초과하는 경우,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)
 - * 작업로(포장) 설계는 인허가 시 작성·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
- (지원한도)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작업난이도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차등적용 가능, 포장지원은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
 - * 예) 경사도 10°미만 총사업비 4백만원, 10~20° 5백만원, 20°이상 총사업비 6백만원
 - * 예) 보수와 포장을 동시에 할 경우 : 작업로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/km 이내 + 위험구간 포장지원 총사업비 5백만원/km 이내(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 가능)

④ 수실류 수형조절

- (지원내용) 밤, 뽕은감,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전정(주지절단 필수), 솎아베기 등
 - * 동일 사업지(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)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
 - * 수목의 수세에 따라 강도의 수형조절 시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니 사업 선택 시 주의 必
 - *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현장점검 시 주지절단 확인 必
- (지원단가) 총사업비 기준 1,832천원/ha
 - * 솎아베기,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·조정 실행